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6월 9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31일, 정재동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5월 3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3년 6월 9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 현장점검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분쟁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해 현장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의 주거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

2) 주요내용

-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대해 현장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명시하여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